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			
1	2000년도성남시 세입·세출결산 승인안	□ 제안이유 · 2000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·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, 그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· 시의회에서 선임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함 □ 주요골자 (단위 : 원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예 산 액</th><th>세입결산액</th><th>세출결산액</th><th>세계잉여금</th></tr><tr><td>계</td><td>785,271,858,000</td><td>917,849,190,340</td><td>614,798,733,300</td><td>303,050,457,040</td></tr><tr><td>일반회계</td><td>539,374,101,000</td><td>651,927,234,290</td><td>459,256,458,170</td><td>192,670,776,120</td></tr><tr><td>특별회계</td><td>245,897,757,000</td><td>265,921,956,050</td><td>155,542,275,130</td><td>110,379,681,920</td></tr></table>	구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	계	785,271,858,000	917,849,190,340	614,798,733,300	303,050,457,040	일반회계	539,374,101,000	651,927,234,290	459,256,458,170	192,670,776,120	특별회계	245,897,757,000	265,921,956,050	155,542,275,130	110,379,681,920	회 계 과	각상임 위원회
구분	예 산 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																				
계	785,271,858,000	917,849,190,340	614,798,733,300	303,050,457,040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539,374,101,000	651,927,234,290	459,256,458,170	192,670,776,120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245,897,757,000	265,921,956,050	155,542,275,130	110,379,681,920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 28공포)되어 같은 법 제37조의 3(수수료)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함	세 정 과	행정 경제																				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3	성남시2001년제 3차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	□ 주요골자 ·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9,000원, 법인 20,000원으로 하고, 분사무소의 설치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9,000원으로 함(안 별표1) □ 제안이유 · 백궁역세권 주변도로 확장부지를 매입하고 폐도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·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어 학교시설로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적은 아파트 건립부지 및 소규모토지, 수도가압장 폐쇄에 따른 토지를 매각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·공공용 부지확보등 효율성 높은 재산으로 대체 조성하고 · 서현저수지 물리면적 축소로 저수지의 기능을 못함에 따라 시민이 편안하게 유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고 · 98년도 우리시에서 공급한 목련마을 SK시영 임대아파트 156세대를 94%가 조기분양을 원하고 있어 임대주택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조기에 분양하여 입주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	회 계 과	행정 경제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4	성남시식품진흥 기금설치및운영 조례안	□ 주요골자 · 취득(매입) - 토지 36필지 17,519.8㎡ (10,711,101천원) · 처분(매각) : 매각가격 43,387,299천원 - 토지 34필지 38,619.8㎡ (36,590,223천원) - 건물 3동(156세대) 12,247㎡ (6,797,076천원) □ 제안이유 ·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, 동법시행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(복지부훈령 제724호)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운용관리 하였으나 · 식품위생법 제65조(과징금) 및 동법제71조(식품진흥기금), 동법시행령 제43조(기금의운용)의 개정 시행과, 2000. 7.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(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)가 신설되어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(과징금)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 됨으로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함 □ 주요골자 · 기금의 조성, 귀속절차, 용도에 관한 사항 및 운용·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~6조) ·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	위 생 과	사 회 복 지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성남도시계획 (학교, 공원)변경 결정의견청취안	·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0조) · 용자 계획수립, 대상, 신청, 조건, 용자금의 대하 등 용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1조 ~ 15조) · 기금의 운용계획,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6조, 제17조) □ 제안이유 · 성남 도시계획시설중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시설중 지역여건의 변화 및 재원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회복과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학교 결정(변경)조서 <table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개소</th> <th colspan="3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tr> <td>변경</td> <td>3개소</td> <td>134,968.1</td> <td>증)15,183.9</td> <td>150,152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· 공원 결정(변경)조서 <table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개소</th> <th colspan="3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tr> <td>폐지</td> <td>1개소</td> <td>5,093,000</td> <td>감)5,093,000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변경</td> <td>4개소</td> <td>4,360,366</td> <td>감) 97,566</td> <td>4,262,800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분	개소	면적 (㎡)			비고	기정	변경	변경후	변경	3개소	134,968.1	증)15,183.9	150,152		구분	개소	면적 (㎡)			비고	기정	변경	변경후	폐지	1개소	5,093,000	감)5,093,000	-		변경	4개소	4,360,366	감) 97,566	4,262,800		도시과	도시건설
구분	개소	면적 (㎡)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3개소	134,968.1	증)15,183.9	150,15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개소	면적 (㎡)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지	1개소	5,093,000	감)5,093,0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4개소	4,360,366	감) 97,566	4,262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															
6	성남도시계획 (지구단위계획 구역)결정의건 청취안	□ 제안이유 ·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등동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는 바 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함 □ 주요골자 ·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지구명</th><th colspan="3">면 적 (㎡)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<tr><th>기정</th><th>변 경</th><th>변경후</th></tr><tr><td>신 설</td><td>고등지구 단위계획 구 역</td><td>-</td><td>증)202,100</td><td>202,100</td><td>그린벨트 해제지역</td></tr></table>	구 분	지구명	면 적 (㎡)			비 고	기정	변 경	변경후	신 설	고등지구 단위계획 구 역	-	증)202,100	202,100	그린벨트 해제지역	도 시 과	도시 건설
구 분	지구명	면 적 (㎡)			비 고														
		기정	변 경	변경후															
신 설	고등지구 단위계획 구 역	-	증)202,100	202,100	그린벨트 해제지역														
7	성남시주거환경 개 선 지 구 조 례 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, 기반시설의 절대 부족과 확충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됨. · 따라서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폐율·용적율등을 건축법의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	건 축 과	도시 건설															

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위 회
8	성남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	□ 주요골자 · 건폐율이 최고 90퍼센트까지 가능하였으나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수준인 60퍼센트로 강화함(안 제11조) · 용적률의 경우 종전에는 500퍼센트까지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300퍼센트로 강화함 (안 제13조) □ 제안이유 ·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거용 건축물(다세대, 다가구)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중 제4호의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(안 별표2 제4호 및 제5호)	교통행정과	도시 건설